

# 농약 안전사용과 판매상의 역할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적정하고 안전한 사용등을 실천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이다.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농약판매상의 역할은 너무나 크다. 농약을 판매할 때는 병해충에 맞는 농약의 선택은 물론 구입자에게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율해는 농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할 것이다.

남 중 우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 1. 머리말

오늘날 농약이 농산물 증산에 필요 불가결한 영농자재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약의 원활한 공급에 이바지하여 오신 농약 판매상 여러분들의 역할은 생산자, 소비자 못지 않게 또한 큰 것입니다. 병해충과 잡초 방제를 위해 농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농약공해에 대한 반론의 소리도 드높아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규제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도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2. 꼭 알아두고 지켜야할 일

이런 면에서 농약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판매상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가. 고시안된 품목은 판매 말아야

농약은 반드시 정부당국이 고시한 품목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병해충, 약효보증기간,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표시가 없는 농약은 부

정농약이므로 절대로 구입·판매해서는 안되겠으나 아직까지도 무고시, 무등록 농약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부정농약은 반아놓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무고시, 무등록 농약들은 마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처럼 외국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판매상 여러분께서는 포장에 국내 제조회사에서 판매하는 농약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반품, 폐기토록

농약은 정밀화학 제품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약효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약효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효가 없는 농약을 판매하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팔아서는 안되는데도 판매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약을 판매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은 대부분이 성수기가 지난 후인 10월말까지이므로 11월 이후에 재고 농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신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

또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은 제조회사가 수거하여 다시 제조하거나 폐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판매자로서는 이러한 재고 농약이 발견되면 시·군의 농약검사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에 봉인조치를 받아 반품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삼 강조드립니다.

#### 다. 포장지 식별이 곤란한 농약이나 표기내용 변조, 판매 않도록

제조공장으로 부터 운송도중 훼손 또는 탈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러한 농약은 공급자로부터 인수는 물론 판매하는 일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된 라벨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이유로 변조 또는 별도 판매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 라. 개포장·분포장 판매 및 자체검사필증 없는 농약 판매금지

농약은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자체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출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농약은 품질불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약은 공급받지 않

도록 하고 또한 취급하지 말기 바라며, 특히 농약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여러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은 부정품의 거래 또는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판매

는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마. 맹독성 농약의 취급·판매 제한

농약은 독성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

표 1. 농약의 독성구분과 취급제한기준

독성구분	농약명	품목명(상표)	취급제한기준
맹독성농약 (2개품목)	잎말이나방약 솔잎혹파리약	파라치온유제 테믹입제	1)공급대상 : 조달청, 전매청, 산림청, 농협에 한함. 다만, 테믹입제는 산림청에 한함. 2)수송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혼적 수송 금지 3)보관 : 환풍기를 설치하고 ‘맹독성 농약창고’임을 표시.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과 별도 보관하고 시건장치 4)판매 : 별도 진열장(“맹독성 농약”이라 표시)을 설치하여 진열판매 5)사용 : 파라치온유제는 과수 이외의 모든 농작물에 사용금지, 테믹입제는 소나무 이외의 임목 및 농작물에 사용금지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취급관리책임자에 한함.
고독성농약 (32개품목)	잎말이나방약  진딧물약  깍지벌레약	에카로쿠스유제, 포스트수화제(이미단), 디디비피유제, 이피엔유제, 아진포수화제(구사치온), 아조포유제(호스타치온) 포스팜액제(다이메크론), 모노포액제(아조드린·뉴바크론), 메타유제(메타시스톡스), 바미드액제(킬발), 휘테노유제(호스타카), 메소밀액제(메리트), 살비란피유제, 벤즈유제(온솔), 피리디피유제(뉴단) 메카밤유제(모폭스) 메치온유	1)수송 : 맹독성 농약과 동일 2)보관 :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시건장치 3)사용 : 수도사용 금지 4)기타(인화공정제 및 메절브로마이드 훈증제) ○공급대상 : 조달청, 전매청,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농협,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한함. ○사용자 : 공급대상 및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함. 다만,

독성구분	농약명	품목명(상표)	취급제한기준
고독성농약	응애약	제(수프라사이드) 가보치수화제(트리치온), 알리 포유제(토락)	실수요자가 사용할 경우 농산 물검산소, 식물검역소,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 책임지도하 에 사용
	심식나방약	다수진수화제(다이아톤), 포스 톤유제(톱벨), 이피엔수화제	
	굴나방약	오메트액제(호리마트), 디디론 유제(란백)	
	배추흰나비약	그로빈유제(벌렌), 메타포액제 (모니타)	
	담배나방약	메소밀수화제(란네이트), 지오 릭스유제	
	토양소독약	싸이론혼중제, 클로로피크린혼 중제	
	저곡해충약	인화늄중제(에피훅), 메질브르 마이드혼중제	
보통독성농약 (382개품목)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전품목	1)수송: 맹독성 농약과 동일 2)보관: 농약창고임을 표시하 고 시간장치	

(1988년 12월31일 현재)

독성, 보통독성으로 구분(표1)하고 이 독성구분에 따라 공급대상, 수송, 보관, 판매 및 사용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맹독성 농약은 시관상에서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으니 절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3. 몇가지 부탁 드림

다음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여러분 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덧붙여서 몇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가. 농약의 보관 및 변질예방 철저

농약은 보관시 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 등의 보관장소와 구획·구분하여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고 창고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깔판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진열대에 차광시설이 없어 햇빛등에 일정기간 경과하면 화학물질의 변화등으로 약효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주의해야 하 겠습니다.

#### 나. 농약가격 표시제의 이행과 농약 판매대장 기입

당해년도 생산농약은 희망소비자 가격(권장소매가격)이 인센, '판매되고 있으나 이월 재고 농약은 전년도 가격이므로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 판매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품목별 구입처별 구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철저히 기입하게 되면 재고과약 등에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 농약관리대장을 기재하여 보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불량농약의 봉인 및 수거협조

시·도(시군) 단속공무원 또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직권검사에 의해 기준미달인 불합격농약의 모집단이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시·도(시군)을 통하여 판매상 여러분들에게 통보하여 완전수거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자기창고 또는 판매 구역내에 이러한 동일 모집단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혹시 발견되면 시·군 단속공무원에게 연락, 봉인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라. 무조건 농민이 원하는 농약, 이익이 높은 품목만의 판매 지양

병해충이나 잡초에 알맞은 농약을, 제 때에 규정된 희석 배수로, 정해진 양을 사용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농약인데 이러한 과제를 분담하여 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 농약의 약효나 약해등에 개의치 않고 농민이 달라는 농약만을 무조건 판매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익이 높은 품목만을 판매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농약을 사러온 농민에게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만을 판매하되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농약의 허위,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정확한 정보 및 지식없이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지도기관의 자문과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기발전을 위한 지식탐구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마. 불량농약 적발에 적극 협조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농약을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계법규나 행정지도 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농약검

사 공무원의 단속이나 점검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난해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지적한 조치만 해도 적지않음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농약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 하여 농약판매상 여러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릴 것은 불량농약 적발에 대한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을 때, 또는 판매한 농약의 사용자로부터 약효, 약해 등의 여론이 있을 때 등 농약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농약검사 공무원에게 알려 시료를 발취하여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검사 의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4. 안전사용을 위한 대농민 지도와 홍보

농약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영농방법이 나오지 않는 현여건하에서는 농약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약사용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대농민 홍보교육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과 농약중독등에 대한 부작용 요인이 심

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주의의 사실입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요란을 피우지만 운전자나 승객이 얼마나 이를 이행하느냐가 교통사고때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접하고 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닌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안전사용 실천 생활화돼야

농업은 한 병해충을 대상으로 적정한 농약을 선택하여 적기에 적량을 사용하여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민의 농약에 대한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상작물에 대한 약효가 없다」 「약해가 발생되었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를 확인하여 보면 거의가 잘못 사용되었거나 적정농약을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고농도 살포를 한데 그 주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약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농약중독등에 대한 보도에 접할때마다 필요 이상의 고농도 살포라든지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고무장갑등의 착용문제가 지식이나 교육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되었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

에 옮겨 지키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며 그 이전에 안전사용에 대한 실천이 습관화 생활화 되었다면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불신감의 요인의 일부는 망각속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안전보관으로 오용실수 막아야

농약은 적든 많은 간에 독성을 지닌 정밀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농민이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보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와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아무데나 버려서 물이나 흙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을 오염시키는 일도 있고사이다. 콜라, 박카스 등의 음료수병이나 기타 용기에 보관하여 어린이나 술을 마신 사람이 음료수나 의약품 등으로 잘못 알고 마시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원래의 농약병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보관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어린이나 노약자의 손이 닿지 않게 별도의 상자에 넣어 보관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벨이 떨어졌거나 훼손되었다면 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최소한 농약명만이라도 적어 보관하여 다시 사용할 때 오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조제는 별도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용한 빈병이나 빈포장은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제도합니다.

제조제는 식물을 죽이는 약으로 잘못 사용하면 애써 가꾼 농작물까지도 죽일 수 있으므로 다른 농약과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지도하여 제조제 오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한 농약 빈병, 빈포장지 등이 논, 밭, 하천 등지에 함부로 버려진다면 농촌주변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들을 회수 소각 또는 수집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맺음말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그의 적정하고 안전한 사용등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며,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농약을 판매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는 요망사항 또한 많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농약안전사용 홍보에 대한 정부당국은 물론 생산자, 소비자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상호신뢰속에 판매상 여러분께서도 모두 흔쾌히 동참하여 농약에 대한 필요이상의 오해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